

하수급인 근로자임금, '공익채권' 포함돼야

2013년 08월 19일 (월)

이시봉 ✉ sblee27@kosca.or.kr

기업회생절차시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불리 건설정책연 “노임보장케 통합도산법 개정을”

건설기업 회생절차 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토록 '통합도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건설기업 회생절차 시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 우선 지급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에서 열위적 위치에 있는 하수급인의 경우 수급인의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하수급인의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회생절차 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및 생활 안정화를 위해 미지급된 채무자(법정관리 신청 수급인)의 근로자 전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분류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변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법상 채무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등은 공익채권으로서 우선 변제되나, 채무자의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불은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통합도산법'에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도 공익채권의 범위에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원의 이종광 연구위원은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봉 기자